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35
----------	-------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김위상 · 김기현 · 우재준
김재섭 · 강승규 · 박정하
김선교 · 임이자 · 고동진
이달희 · 송석준 · 이종배
구자근 · 조정태 · 김승수
인요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임.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국, 중국, UAE 등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현행법상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중 “타목”을 “파목”으로 한다.

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법」 제 18조 단서에 따라 기상청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
타. (생 략)	파. (현행 타목과 같음)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 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 기기·약품의 시험·검사 ·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하. -----파목----- ----- -----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